

예술대학 (서울) 학생회칙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울) 학생회라 한다. (이하 본회)

제 2 조 (목적)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과 창조적 비판적 학문 연구를 통하여 교시인 ‘의와참’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회원의 민주시민적 자질을 함양하여 대학 문화를 고양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예술대학 (서울) 재적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3. 본회 회원은 각 선출직 임원이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대학 자치와 본회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수호해 나갈 의무가 있다.
2.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구성)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술대학 (서울) 운영위원회(이하 예운위), 단대 학생회, 전공 학생회, 집행국을 구성한다.

제 7 조 (특별기구)

1. 본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2. 특별기구는 예술대학 (서울)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술대학 (서울)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제 2 장: 단대학생총회

제 8 조 (지위)

단대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관한 최고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 (구성)

단대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

제 10 조 (권한)

1. 단대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2. 단대학생총회는 예술대학 (서울)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 결정권을 가진다.

제 11 조 (의장)

단대학생총회의 의장은 예술대학 (서울)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12 조 (소집)

1. 단대학생총회는 예운위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예술대학 (서울) 학생회장이 7일 이내에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

해서는 예술대학 (서울) 학생회장이 이를 직접 소집한다.

2. 단대학생총회의 소집은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최소 5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의 단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3 조 (의결)

1. 단대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의 4/10 과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예술대학 (서울)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불신임 결정에 관한 단대학생총회는 예운위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진행 아래,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본회 회원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 제 3 장 예술대학 (서울)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제 14 조 (임무 및 권한)

1. 예술대학 (서울) 학생회장(이하 예술대학 학생회장)은 단대학생회를 대표하여 단대학생총회의 의장, 예운위 위원장, 집행국 의장이 된다.
2. 예술대학 학생회장은 본회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3. 예술대학 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 각 집행국 국장, 차장의 임명 및 파면, 임시 예운위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예술대학 학생회장은 기타 단대학

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예술대학부회장은 예술대학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예술대학 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및 사임 시 임시 예운위를 소집할 수 있고, 임시 예운위의 의결에 따라 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수 있다.
6. 예술대학 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및 사임 시 예술대학학생회장 권한대행비상대책위원장은 10 일 이내에 임시 예운위를 소집해야한다.
7. 예술대학 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및 사임 시 5 차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이 예술대학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선거로 예술대학 학생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8. 예술대학 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및 사임 시 추가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예술대학 부학생회장이 예운위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으로써 권한과 의무를 이행한다.
9. 예술대학 부회장은 예술대학 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 15 조 (임기)

예술대학 학생회장과 예술대학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당선 연도 12 월 1 일 부터 다음해 11 월 30 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해 선거가 성사되지 못할 시 비상대책위원회 의장을 예술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16 조 (선출)

1. 예술대학 학생회장, 예술대학부회장은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예술대학 학생회장, 예술대학부회장이 동시에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예운위 중 1 인으로 의결하여 선출한다.
3. 예술대학 학생회장, 예술대학부회장의 동시 유고 및 사임 시 잔여 임가 100 일 이상일 경우 30 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 17 조 (선서)

예술대학 학생회장은 취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반드시 시행한다 “본인은 () 년도 의혈중앙 예술대학 서울의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18 조 (신분 보장)

예술대학 학생회장 및 예술대학부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위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 3 장: 예술대학 (서울) 운영위원회

제 19 조 (위치)

예술대학(서울)운영위원회(이하 예운위)는 본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 20 조 (구성)

1. 예운위는 예술대학 학생회장, 예술대학부회장, 각 전공 학생회장, 각 전공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단위별 의결권은 한 표로 한다.)
2. 예운위 위원장은 예술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3. 구조조정 등 학내 현황 변경 시, 예운위는 의결을 통하여 차기 예술대학학생대표자회의까지 인정한다.
4.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선거 시까지 예운위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제 21 조 (업무 및 권한)

예운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집행국 업무 집행의 조정
2. 본회의 회칙 개정 발의
3. 단대학생총회 소집 요구와 본회의 회원에 대한 중대한 문제 심의
4. 단대학생총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 의결
5. 규정의 제정 및 수정
6. 단대 산하 위원장 임명 동의 및 특기구 위원장, 위원 소환 및 탄핵 결정
7. 회원 50 인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의결

제 22 조 (소집)

1. 정기회의는 격주 1 회로 하며 그 시기는 예운위에서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예술대학 학생회장 요구 또는 예운위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의결)

예운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집행국

제 24 조 (위치)

집행국은 본회의 최고의 집행기구이다.

제 25 조 (구성)

집행국은 예술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예술대학(서울)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각 집행국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 25 조 (업무 및 권한)

1. 사업 및 예산의 집행
2. 본회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3. 기타 집행국의 업무

제 26 조 (부서 및 기능)

집행국에서는 제반 활동을 위하여 여러가지 그에 부서를 두고 맞는 기능을 관장한다.

제 5 장 전공별 학생회

제 27 조 (구성)

1. 전공별 학생회는 해당 전공 전체 학생으로 구성한다.
2. 전공별 학생회는 해당 전공 학생 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회칙과 조직을 갖는다.

제 28 조 (전공 학생회장)

1. 전공 학생회장은 해당 전공을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2. 전공 학생회장은 해당 전공 학생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 6 장 선거

제 29 조 (피선거자격) 예술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 본회 회원으로 4 차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 30 조 (선거 시기)

1. 예술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임기 연도 전년 11 월 중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선거직 임원은 각각 그 회칙에 의한다.

제 31 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 선관위는 예운위 전원과 집행국 중 2 인으로 구성하며, 예술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선관위 위원장, 부위원장이 된다. (단, 집행국 2 인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3. 선관위는 예술대학 학생회장의 선거일 1 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4. 선관위는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예술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5. 선관위는 선관위가 구성된 후부터 예술대학 학생회장 당선 확정 공고 전까지 예운위의 직무를 대신한다.
6. 선거 기간 동안 예술대학 학생회장과 집행국이 사업 진행, 의견 표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장단과 집행국의 특정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2 조 (보궐선거)

1. 예술대학 학생회장단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경우 잔여 임기가 100 일 이상일 경우 30 일 이내에

- 예술대학 운영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예술대학 학생회장단이 동시에 유고 및 사퇴 시 잔여 임기가 100 일 이상일 경우 30 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3. 제 14 조 6 항의 관한 사항
 4. 제 14 조 7 항의 관한 사항
 5. 예운위가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33 조 (선거시행세칙)

그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34 조 (임기)

제 15 조에 관한 사항

부칙

제 1 조 (발표)

본 회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예술대학 서울/안성 학생회)

예술대학 서울, 안성은 각각 학생회를 구성하여 각 교정의 학생 자치활동을 한다.

제 3 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위단위의 회칙 및 관례를 따른다. 필요 시 예술대학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의결될 수 있다.